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07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0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1. 16)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가. 개정안 요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완화함(안 제26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독립한 사무소 ③ ~ ⑥ (생 략)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사무소 ③ ~ ⑥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6조[1]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2년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이 중 '독립한 사무소'는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2]가 다른 사업자 등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소가 아니라 독립·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2014년 본 법률의 제정 당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으로 명시된 사항임.

○ 본 법률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불공정 계약 관행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과다 근로 및 학습권 침해 사례 등에 대응하여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3] 위 '독립한 사무소'의 요건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2)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무소'란 "실질적으로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가 갖추어져 있어 영업 또는 사무를 영위할 수 있고,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등이 어느 정도 반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방하며, 최소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입장임(2014다43076, 2004도7264, 2003도7508 판결 등).

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창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 규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업계에서 이른바 '공유 오피스(office)'[4]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편화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요건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이로 인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독립한' 사무소의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등 현장의 혼란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5]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한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사무소'만을 갖추면 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인바,

개정안은 시설기준의 완화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창업·영업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4) 업무 공간은 구분지어 사용하되, 회의실, 미팅룸, 화장실, 휴게공간 등은 공용으로 두어 관리비, 통신비 등 부대비용을 절약하고자 고안된 공간 임대 시스템을 말함.

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음(2023. 6. 30).

- 아울러, 현재 다른 업종과 관련하여 그 등록 등의 요건으로 반드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